고려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

2014. 3. 5. 제정 2015. 3. 4. 개정 2015. 5. 18. 일부개정 2017. 4. 1 일부개정 2018. 3. 1 일부개정 2019. 7. 1 일부개정 2021. 8. 1 일부개정 2021. 12. 1 일부개정 <정책기획팀, 대학평의원회>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」 제106조에 따라 고려대학교(이 하 '본교'라 한다) 대학평의원회(이하 '평의원회'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자문 기능에 한한다.
 - 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- 3.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- 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6.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 - 7. 그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 3 조 (구성)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4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12.1>
 - 1. 교원 : 5명
 - 2. 직원 : 2명
 - 3. 학생 : 2명
 - 3의2. 조교 : 1명 <신설 2021.12.1>
 - 4. 교우 : 2명
 - 5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: 2명

제 2 장 조 직

- 제 4 조 (자격)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교원 :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정년보장 교원
 - 2. 직원 : 본교 전임직원으로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직원
 - 3. 학생 : 본교 재적생
 - 4. 조교 : 본교 「조교임용 규정」에 의해 임용된 조교 <신설 2021.12.1>

- ② 교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1. 휴직 및 퇴직
- 2. 학교규칙에 의한 징계
- 3.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
- ③ 직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1. 휴직 및 퇴직
- 2. 학교규칙에 의한 징계
- ④ 학생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1. 수료 또는 졸업
- 2. 학교규칙에 의한 징계
- 3.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·방문학생 및 해외연수
- ⑤ 조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<신설 2021.12.1>
- 1. 「조교임용 규정」 제11조에 의거 임용이 취소된 때
- 2. 학교규칙에 의한 징계
- ⑥ 평의원에게 임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<개정 2021.12.1>
- ⑦ 제1항 각 호의 평의원이 징계절차에 회부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 <개정 2021.12.1>
- 제 5 조 (교수 평의원 위촉) ① 총장은 교수로서 대표성 있는 사람 1명과 다음 각 호의 캠퍼스별로 각 1명을 교수 평의원으로 위촉한다.
 - 1. 서울 인문사회계 캠퍼스
 - 2. 서울 자연계 캠퍼스
 - 3. 세종캠퍼스
 - 4. 녹지캠퍼스(간호대학, 보건과학대학 포함)
 - ② 평의원 후보자는 소속 교수의 협의 또는 선출 등 대표자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로 선정하여야 하며, 단수 또는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.
- 제 6 조 (직원 평의원 위촉) ① 총장은 부장급 이상 직원으로서 대표성 있는 사람 1명과 차 · 과장급 이하 직원으로서 대표성 있는 사람 1명을 직원 평의원으로 위촉한다.
 - ② 제1항의 위촉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.
- 제 7 조 (학생 평의원 위촉) ① 총장은 학부 학생으로서 대표성 있는 사람 1명과 대학원 학생으로서 대표성 있는 사람 1명을 학생 평의원으로 위촉한다.
 - ② 제1항의 위촉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.
- 제 7 조의2 (조교 평의원 위촉) ① 총장은 조교로서 대표성 있는 사람 1명을 조교 평의원으로 위촉한다.
 - ② 제1항의 위촉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.
 - <본조 신설 2021.12.1>
- 제 8 조 (교우 평의원 위촉) 총장은 대학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교우 2명을 교우 평의원으로 위촉한다.

- 제 9 조 (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평의원 위촉) 총장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사람 2 명을 평의원으로 위촉한다.
- 제 10 조 (추천기한 등) ① 총장은 평의원 후보자 추천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추천이 없으면 직접 해당 평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.
 - ② 평의원의 위촉절차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 11 조 (평의원회 의장 등)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.
 -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.
 -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 - ④ 평의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- 제 12 조 (임기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- ②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서 평의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지위의 상실 또는 임기 만료와 함께 평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.

제 3 장 운 영

- 제 13 조 (회의소집) ① 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.
 - ② 평의원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 - 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 - 2.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 요구를 한 때
 - ③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 7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의안을 명시하여 회의일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회의 개최는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 14 조 (의사 정족수 등)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 - ② 평의원회는 총장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심의사항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.
- 제 15 조 (회의록) ① 평의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을 받은 후 총장에 게 제출한다.
 - ② 의장은 회의록을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1.8.1>
- 제 16 조 (비밀유지) 평의원 및 간사는 평의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 17 조 (운영 시행세칙)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

칙으로 정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8 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, 「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」,「고려대학교 학칙」 및 그 밖의 본교 학교규칙 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교수평의원도 교수의원의 임기만료로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. (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2조 개정)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캠퍼스 명칭변경은 2017년 3월 1일자로 적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, 제15조 개정) 제2조(경과조치) 제4조 제2항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, 제4조 개정, 제7조의2 신설)